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[별지 제48호 서식]

품 질 검 사 의 뢰 서

1. 시험.검사종목		원지무게, 내수성, 내박리성, 내스크래치성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, 폼알데하이드			(재고량: 8 세대)
2. 시 료 명		피니싱호일		생산자 : ㈜피엔씨코리아	
3. 시 료 량		1조		4. 채취일 :	2020년 6월 19일
5.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		대한민국			(□ KS ■ 비KS)
6. 시료채취장소		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6-3 (김포마송 A-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)현장 내			
7. 시료채취자		소속 : 더본종합건설㈜	담당업무: 품질관리자	성명: 오 기 석	(서명또는인)
8. 입 회 자		소속 :㈜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	담당업무: 건설사업관리자	성명: 노 진 영	(서명또는인)
9. 시험및시방기준		LH 47010			
10.성과이용목적		■ 품질시험용	□ 자재성능감정용	□ 기타 ( )	
11.공사개요	공사명	김포마송 A-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			
	착공일	2018-12-31			
	준공예정일	2021-01-01			
12.발주자		한국토지주택공사			
13.시공자		한신공영㈜			
14.국가중요시설여부		해당사항없음			

[건설기술진흥법] 제60조 1항에 따라 품질시험.검사를 의뢰합니다

2020년 월 일

의뢰인: 성명 현장대리인 : 이 주 상 (서명또는인)

전화번호 (070)8984-5100

주소 :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6-3
(김포마송 A-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)

[비고]

1.국가중요시설 여부는 "국가중요시설(시설명)"로 적습니다.

2.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,국회의사당,대법원,국가정보원,중앙행정기관의 청사,원자력발전소, 발전용량 100만kw이상 발전소,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라디오 TV방송국,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, 군사시설,공항 및 댐등을말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의뢰서작성 → 접수 → 시험.검사실시 → 성과서 작성,결재 → 발급

* 절 취 선 *

접 수 증

1. 접 수 일 :
2. 의뢰시험. 검사종목 :
3. 시료명및 시료량 :

귀하께서 의뢰한 시험.검사 요청건은 접수일부터 약 ( )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접 수 자 :

성 명 : (서명또는 인)